

	<h2 style="margin: 0;">직제규정</h2>	규정번호	3-1-25
		제정일자	2006.11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18차
		소관부서	전략기획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대학의 조직은 법인정관 및 대학 학칙이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.

제3조(사무분장) 조직의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분장은 사무분장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(조직구분) ① 대학에는 직속기관, 행정부서, 부속기관, 부설기관, 학과를 둔다.

② 대학의 각종 주요사항을 자문·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③ 대학의 조직도는 [별표1]과 같다.

제5조(직무) ① 각 기관 및 부서에는 소관 사무를 정리하고 기관 및 부서의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기관장과 부서장을 둔다.

② 학과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학과장을 둔다.

③ 기관 및 부서 내 팀과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과 센터장을 둔다.

제3장 직속기관

제6조(직속기관) ① 직속기관에 교목실, 혁신지원사업단을 둔다.

② 교목실에는 실장을 두고 안수 받은 교역자로서 교원을 보한다.

③ 혁신지원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한다.

제4장 행정부서

제7조(행정부서) ① 행정부서에 행정부서에 교무입학처, 학생성공처, 대외협력처, 행정지원처, 전략기획처를 둔다.

② 행정부서에는 처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한다. 다만, 행정지원처장은 학교법인새빛학원정관 제8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원으로 보한다.

③ 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, 전임교원으로 보한다.

제8조(교무입학처) ① 교무입학처에 입학팀, 교무학사팀을 두고, 산하기관으로 입학홍보전략센터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둔다.

② 팀에는 팀장을 두고 직원으로 보하며,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한다.

제9조(학생성공처) ① 학생성공처에 학생지원팀을 두며, 산하기관으로 보건실, 학생상담센터, 장애학생지원센터, 신문방송국, 예비군대대를 둔다.

② 팀에는 팀장을 두고 직원으로 보하며,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신문방송국에는 국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한다.

제10조(대외협력처) ① 대외협력처에 산학관리운영팀, 대외사업지원팀, 취업지원팀을 두며, 산하기관으로 현장실습지원센터, 자유학기진로체험센터, 사회봉사센터를 둔다.

② 팀에는 팀장을 두고 직원으로 보하며,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한다.

제11조(행정지원처) ① 행정지원처에 총무팀, 관리팀을 둔다.

② 팀에는 팀장을 두고 직원으로 보한다.

제12조(전략기획처) ① 전략기획처에 기획예산팀을 두며, 산하기관으로 성과혁신센터를 둔다.

② 팀에는 팀장을 두고 직원으로 보하고,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한다.

제5장 부속기관

제13조(부속기관) ① 부속기관에 학술정보원, 국제교류문화원, 교육혁신전략실을 둔다.

② 부속기관에는 기관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한다.

제14조(학술정보원)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, 전산정보팀을 둔다.

② 팀에는 팀장을 두고 직원으로 보한다.

제15조(국제교류문화원) ① 국제교류문화원에 국제교류팀을 둔다.

② 팀에는 팀장을 두고 직원으로 보한다.

제16조(교육혁신전략실) ① 교육혁신전략실에 교육혁신팀을 둔다.

② 팀에는 팀장을 두고 직원으로 보한다.

제6장 부설기관

제17조(부설기관) ① 부설기관에 산학협력단, 평생교육원, 예지관(학생생활관), 안산대학교회를 둔다.

② 부설기관에는 기관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한다. 다만, 안산대학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8조(산학협력단) 산학협력단 조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9조(평생교육원)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운영팀과 에이블대학운영팀을 둔다.

② 팀에는 팀장을 두고 직원으로 보한다.

제20조(안산대학교회) 안산대학교회 조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7장 학 과

제21조(학과) ① 대학에 두는 학과는 학칙 제4조에 따른다.

② 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뷰티아트과와 의료미용과는 의료뷰티학부, 식품영양과와 호텔조리과는 식품영양조리학부, 유아교육과와 보육과는 영유아학부로 운영한다.

③ 학과에는 학과장, 학부로 운영하는 학과는 학부장을 두고 교원으로 보한다.

④ 학과 및 학부에는 실습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습과장을 둘 수 있으며, 교원으로 보한다.

제8장 보 칙

제22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 년 6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7조, 제8조, 제10조, 제12조, 제13조의 조항은 2016년 3월 21일부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2018 년 7 월 1 일부 시행한 조직 개편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2019년 3월 18일부 및 2019년 5월 1일부 시행한 조직 개편은 이 개정 규정에

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2019년 9월 1일부 시행한 조직 개편은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